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14

발의연월일: 2020. 11. 30.

발 의 자: 박영순·문진석·이개호

황운하 · 임호선 · 김경만

강준현 • 박성준 • 장철민

이성만 • 윤미향 • 조승래

권인숙 · 이학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부정청탁에 해당하 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교도소에서 수용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외부인 과의 연락을 주선한 교도관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로 선고한 판결(대전지방법원판결, 2017고합125)이 있은바, 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에 교정시설에서 교도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 등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14호까지의"를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의"으로 한다.

14의2.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 작업, 분류·처우 등 교정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 록 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	
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	
는 아니 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14의2.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u>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u>
	육, 교도작업, 분류·처우 등
	교정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
	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u>제14호까지의</u> 부	15 <u>제14호까지 및</u>
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제14호의2의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	
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	
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	
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